

창원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1나53464(본소), 2021나53471(반소) 판결

[공사대금 · 하자보수비용 청구]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1나53464(본소), 2021나53471(반소)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2. 9 선고 2018가단2218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명중, 이승민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해봉, 손명성

변론 종결2022. 5. 27.

판결 선고2022. 9. 23.

제1심판결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2. 9. 선고 2018가단2218(본소), 2019가단4594(반소)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156,341원 및 그중 5,394,127원에 대하여는 2019.

10. 25.부터 2021. 2.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중 6,582,214원에 대하여는 2019. 10. 25.부터 2022. 9.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118,000원에 대하여는 2022.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84,109,4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이 사건 2021. 1.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01,668,876원 및 그중 100,488,876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118,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채권 부분을 감축하고, 양수금 청구 부분을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심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1) .

2)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38,905,8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6. 7. 13.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E 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를 3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도장공사 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은 16,100,000원이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1. 발주자: (주)C

원도급공사명: E아파트 신축공사

2. 하도급공사명: 도장공사

3. 공사장소: 경남 통영시 H 외 13필지

4. 공사기간: 착공 2016년 7월 13.일

준공 2017년 9월 30.일

5. 계약금액: 일금 삼억팔천오백만원정(₩385,000,000)

○ 공급가액: 일금 삼억육천칠백만원정(₩367,000,000)

○ 매입 부가세: 일금 천팔백만원정(₩18,000,000)

6. 대금의 지급

가. 선금금: 해당사항 없음

나. 기성부분금: 계약 일반조건 참조

다. 지급 방법: 계약 일반조건 참조

7.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계약 일반조건 참조

8.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

9. 하자보수 보증금률: 3%

10.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11. 지체상금률: 0.1%

12. 기타사항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도서,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써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6년 7월 13.일

원사업자

주소: 경남 거제시 I빌딩 3층

상호: (주)C

대표자: 대표이사 J(인)

수급사업자

주소: 경남 거제시 K

상호:(주)A

대표자: 대표이사 L(인)

나. 한편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F 아파트' 재도장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E 아파트는 2017. 11. 10.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8. 3. 6., 같은 달 19일, 같은 해 4. 12. F, E 아파트 공사대금 61,1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2018. 4. 23. 원고의 위 내용증명에 대하여 '동별 전유 또는 공용 부분에 하자 또는 미시공 등이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84,109,486원 [= 'F 아파트 재도장 공사대금 49,500,000원 + 'E 아파트 도장 공사대금 16,100,000원 + 추가공사대금{아파트 외부 바탕면 처리 도장(시공조인트 구간) 15,066,444원 + 철 구조물(난간) 도장 3,443,04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F 아파트 재도장 공사대금 49,500,000원 가) 갑 제2, 6, 16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F 아파트 재도장에 대한 견적서를 받고 수차례 수정을 요구하여 새로운 견적서를 받았던 사실, 피고 대표이사는 45,6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 기재된 최종 견적서(갑 제6호증)를 보고받고 공사를 지시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공사를 시행하고 2018. 3. 30. 피고에게 당초 견적서보다 감액된 49,500,000원(45,000,000원 + 4,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 전 감액을 요구하거나 원고로부터 더 이상 수정견적서를 받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공사대금은 49,500,000원으로 합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F 아파트 재도장 공사대금은 49,500,000원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F 아파트 재도장 공사가 로울러 방식이 아닌 뽐칠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5, 6, 14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F 아파트 재도장 공사를 로울러 방식으로 시공하기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E 아파트 도장 공사대금 16,100,000원 E 아파트 도장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액이

16,100,000원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추가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파트 외부 바탕면 처리 도장(시공조인트 구간) 도장공사의 경우 E 아파트 도장공사 계약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철 구조물(난간) 도장공사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철 구조물(난간) 도장 부분에 관하여 별도의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65,600,000원(= 49,500,000원 + 16,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E 아파트 도장공사 관련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아래 표와 같이 135,978,286원이고, E 아파트 도장공사 시 '뽀칠'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및 벌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액 1,180,000원이 발생하였으며, 피고는 주식회사 M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40,868,876원(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93,130,936원²) + 양수금 1,1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로써 피고의 채권과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을 상계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1,668,8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③ 1층 필로티 기둥부분 및 기타 박리된 도장하자	958,286
2	④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페인트 박리된 도장하자	7,782,385
3	⑤ 지하주차장 주차라인 및 임산부, 장애인표시 도장하자	4,107,000
4	⑥ 지하주차장 주출입 현관 표기오류	435,914
5	⑦ 아파트 외부 바탕면처리 도장하자(시공조인트구간)	15,066,444
6	⑧ 수밀코킹(실리콘)하자	10,247,424

1	③ 1층 필로티 기둥부분 및 기타 박리된 도장하자	958,286
7	⑨ 주출입구 램프구간 박리된 도장하자	420,367
8	⑩ 페인트 포함 재료 보관사항 미이행(3%반영)	3,013,750
9	⑪ 철 구조물(난간) 도장하자	3,443,042
10	② 외벽 페인트칠 고가 단가 비교	42,847,350
11	⑬ 무늬코트 공중 위반	20,860,000
12	④ 베란다 바닥 이물질 제거 공사하자	2,593,824
13	⑤ 바닥 주차장 두께 부실	24,202,500
합계	135,978,286	

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을 제11호증의 기재, 제1심 감정인 N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 아파트 도장 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에는 별지 인용된 하자 내역 기재와 같은 시공상 하자가 존재하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합계 86,195,935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원고는 아파트 외부 바탕면 처리 도장하자(시공조인트 구간, 하자 순번 7번), 철 구조물(난간)도장(하자 순번 11번)의 경우 원고가 투입한 비용을 정산받거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하자 비용 산정에서는 공제되어야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파트 외부 바탕면 처리 도장하자(시공조인트 구간, 하자 순번 7번)의 경우,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파트 외부 바탕면 시공조인트구간 도장 부분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철 구조물(난간)도장(하자 순번 11번)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공사계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에게 무상으로 시공되었다고 판단되는 이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피고는,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페인트 박리된 도장하자(하자 순번 4번), 지하주차장 주차라인

및 임산부, 장애인표시 도장하자(하자 순번 5번), 수밀코킹(실리콘) 하자(순번 8번)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하여 시설물 등을 사용한지 1년여가 경과한 상태에서 감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인의 현장 조사시 발견된 하자는 그 정도가 경미하거나 원고의 사용상 내지 관리상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없는 점, 도장 하부의 시멘트 박리현상이 그 원인일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갑 제12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건물의 공사완료일로부터 감정인 현장조사기간까지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하였을 수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중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도장작업 외 다른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 및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관리상 잘못으로 인하여 하자가 확대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9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77,576,341원(86,195,935원×0.9, 원 단위 미만 절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3) 원고의 시효소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 부분 중 도장 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별표 4]에 의하면 소멸시효기간이 1년인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후에 위 하자발생을 주장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도장하자에 관하여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진다는 하자발생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진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5다21254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도장 부분의 하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을 제2 내지 5,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도장 부분의 하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갑 제1호증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서상 정해진 하자보수기간이 공사완료일로부터 2년이고, 피고는 공사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9. 10. 18. 이 사건 반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위 반소장이 2019. 10. 24.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러한 이유에서도 원고의 하자보수 기간 도과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수금 채권에 관한 판단

1)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도급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참조).

2) 을 제8, 9, 10, 13호증(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E 아파트 외벽을 뿔칠로 시공함에 따라 시행사인 주식회사 M이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과태료 48만 원, 벌금 70만 원을 납부한 사실, 위 회사가 2021. 12. 17. 피고에 위 금액 상당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임의로 뿔칠 시공으로 변경하여 발생한 과태료 및 벌금 상당 1,180,000원은 하자확대손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양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상계에 따른 본소 및 반소 채권액의 각 소멸 결과)

가.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자신이 반소에 따라 원고에 갖는 채권과 원고의 본소 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로 본소에 대하여 항변한다.

나. 상계적상 및 상계의 의사표시

1) 민법 제667조 제2항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수청구권과 병존하여 처음부터 도급인에게 존재하는 권리이고,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632 판결 참조). 따라서 민법 제667조가 정하는 수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성립과 동시에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100067, 2012다10007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본소 채권(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의 미지급 대금), 피고의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이 사건 공사완료일인 2017. 11. 10. 성립하여 같은 날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양 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도달한 2017. 11. 10.경 상계적상에 있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반소 채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본소 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반소장이 2019. 10. 24.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다. 상계의 결과(본소 및 반소청구채권액의 각 잔존액)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 채권 65,600,000원은 상계적상일인 2017. 11. 10.에 소급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 채권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77,576,341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채권은 상계로 모두 소멸하였고,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상계의 결과로 11,976,341원(77,576,341원 - 65,600,000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상계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13,156,341원(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채권 11,976,341원 +

양수금 1,180,000원) 및 그중 제1심판결일 인용한 손해배상금 5,394,12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19. 10. 25.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손해배상금 6,582,21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19. 10. 25.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2. 9.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양수금 1,118,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2.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판사김구년

판사정강은

판사조유리

별지

1)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취지를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취소한다'라고만 기재하였으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행한다.

2) 피고는 제1심에서 ② 도장공사 부분의 청구원인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주장하였으나(2019. 10. 18.자 준비서면 참조), 당심에서는 위 부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반환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바(2021. 8. 2.자 항소이유서,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참조), 피고가 이 부분 청구원인에 대하여 제1심 청구원인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청구원인을 선택적으로 추가한 것으로 선해하고, 이 금액의 인정 여부에 관해서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서 판단한다.

3) 하자내역 번호는 제1심의 하자감정서 8면 산출내역표 기재 하자내역 순번에 따름